

제 6 조 제2항중 "참석위원 전원"을 "관련 자치단체위원 전원"으로 한다.

제 1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1 조 2 (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들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관련 공공단체 및 국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전문가중에서 협의 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단가는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준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9 】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안

제출년월일 : 1993. 5. 7.
제 출 자 : 양주군수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의 업무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 하므 로써 권역내 균형있는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골자

- 가. 협의회 회의 기능 (안 제5조)
- 나. 협의방법 (안 제6조)
- 다. 비협의 사항 조정 요청 (안 제12조)
- 라. 자문위원 구성 (안 제13조)
- 마. 실무협의회 (안 제14조)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8조

- 행정협의회의 규약 변경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안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두천권행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소 설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동두천시에 둔다.

제3조 (구성) 협의회는 동두천권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동두천시, 양주군, 광주군, 연천군, 포천군으로 구성한다.

제4조 (조직) ① 협의회의 위원은 동두천시장, 양주군수, 광주군수, 연천군수, 포천군수로 하고 회장은 중심자치단체장인 동두천시장으로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동두천시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 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부시장, 부군수가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의결권을 갖는다.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주택단지 및 공업용지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5. 행정구역 경계관리등의 사무의 협조, 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6. 지원의 개발, 조사에 관한 사항
7. 환경오염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8. 시·군간 연결버스 노선의 신설, 연장등 교통망 확충에 관한 사항
9. 주요 연결도로등 도로망의 신설, 변경, 확장, 포장등에 관한 사항
10. 상·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11. 시·군 상호간의 자료, 정보, 기술의 교환
12. 기타 광역행정, 광역개발 수행상 필요한 사항

제6조 (협의방법)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받아 30일이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협의안건의 합의는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2회로 하되 2월과 3월사이, 8월과 9월 사이로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 개최후 14일 이내에 협의회 개최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참석) ①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도의 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협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시군 실과소장 배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처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동두천시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동두천시 기획계장으로 한다.

제10조 (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의견의 개진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미합의사항 조정요청)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기획(감사)실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정안건에 따라 관계 실과소장이 배석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동두천시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되 간사 및 서기는 제9조 제1항, 제2항을 준용한다.

④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⑤ 실무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 검토의견서를 협의회 위원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경비부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제16조 (회계) 협의회의 경리상황은 매 회의때마다 보고하여 협의회의 숙인을 받는다.

제17조 (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 (보칙) 협의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약폐지) 이 규약의 시행과 동시에 **동두천권 행정협의회** 규약 ('88.11.15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당시 종전의 규약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10 】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 1차 변경 계획 동의안 철회의 건

제의년월일 : 1993. 5. 11.

제 의 자 : 의 장

주 문

양주군수가 제출한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철회 요구는 이를 동의한다.

제3장 이유

- 양주군수가 제출하여 제16회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후 보류되어 계류중인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